**1,2차 협력사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델파이파워트레인 (이하 **“원사업자**”라 한다)은 협력사 **㈜ㅁㅁㅁ**(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상호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 준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원사업자는 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ㆍ사용한다.

**제4조(수급사업자 지원프로그램 운용)**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① 원사업자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동반성장보험 또는 상생결제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급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제6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대기업과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원사업자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수급사업자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ㆍ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실적자료 제출)**

① 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명단을 대기업에 제출한다.

② 원사업자는 협약체결 후 발생한 이행실적 자료를 대기업에 수시로 제출한다.

2023년 01월 01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부라다워너(유) 성진하이테크 (유)**

**대표이사 홍진표 (인) 대표이사 정승희 (인)**